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9.

발 의 자 : 김영호 · 김문수 · 이용선
민병덕 · 김준혁 · 서영교
맹성규 · 강경숙 · 김우영
백승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.

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,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,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,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

조 제1항 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. 이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교육감으로 본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	제2조(적용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. 「 <u>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. 이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교육감

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으로 본다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2조의2(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법에서 제2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</u>
---	--